

## 개인정보 이동권의 법적 이슈와 입법 정책 방향

이창범\*

### 요약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정보 이동권, 전송 지시권, 데이터 오너십, 개인정보 집중, 개인정보 독점

## A Study on Legal Issues of Data Portability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Policy

Yi, Chang-Beom\*

### Abstrac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needs to be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self-control of data subjects and promote personal data use. Howeve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onstitutes a high risk of invasion of privacy of data subjects and may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data controllers, so careful and thorough design is warrante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intensify the concentration and monopoly of personal data, result in problems of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nd enrich only the profits of giant platforms by burdening the data subject with high transfer cost. By contrast, SMEs are more likely to endure a personal data deprivation. From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re raised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i) Whether to include inferred/derived data,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ctivity data, sensitive data, and personal data of third parties within the scope of data portability; ii) whether SMEs are included in the data porting organization; iii) whether to exclude SMEs or large platforms from the scope of the data receiving organization; iv) Whether to allow the right to transmit to other data controllers, v) Whether to allow the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vi) How to safely exercis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vii)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nd immunity of a data porting organization,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action based on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data portability.

Keywords : data portability, right to transfer, data ownership, data concentration, data monopoly

Received Aug 30, 2021; Revised Aug 31, 2021; Accepted Nov 10, 2021

\* An adjunct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Law (miso4all@naver.com)

## I. 서언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이전 또는 전송을 요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중인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개인정보 열람 및 사본 요구권을 확대·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보 이동권이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입법론적으로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보다는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보 이동권이 이른바 “마이 데이터”란 용어와 혼용되면서 개인정보의 유통, 공유 등을 위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 이동권의 행사 결과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정보 이동권의 출발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는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보 이동권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이슈와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보 이동권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적으로 정보 이동권의 도입 배경 및 연혁, 정책 목표 등을 살펴보고, 유럽,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입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보 이동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를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균형적인 정보 이동권의 구현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 II. 정보 이동권의 도입 배경 및 정책 목표

### 1. 정보 이동권의 도입 배경 및 연혁

개인정보 이동권은 데이터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단순히 경제주체 간 연락수단으로만 이용되던 시기에는 정보 이동권의 필요성은 인식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때에는 정보 접근권(열람 요구권 및 사본 요구권)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정정보처리원칙(1973년),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980년), UN 전산처리된 개인정보파일 가이드라인(1990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5년),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2005년) 등은 정보 이동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컨대,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은 “개인참여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 접근,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1995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은 “접근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여부,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제12조).<sup>1)</sup>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해서 개인 참여의 원칙을 채택한 최초의 문헌은 1973년 미국의 공정정보처리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이다.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보건·교육·복지부 장관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기록, 컴퓨터 및 시민의 권리」라는 제목의 동 보고서는 개인참여

1)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 참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해당 정보의 출처가 포함되며,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간격으로, 거리낌 없이, 그리고 지나친 지연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 원칙을 포함하여 8개의 권리로 구성된 공정정보처리원칙을 담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1973).<sup>2)</sup> 이후 개인참여 원칙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종 국제규범 및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잡고 있다.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구 정보통신망법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역시 이들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의 영향을 받아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에는 사본의 교부 요구권이 포함된다.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제30조제2항),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열람 요구권에는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호).

그러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이메일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의 등장으로 열람 요구권과 사본 요구권만으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용자의 사진, 기록, 일기, 이메일 등 일상의 정보를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통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보관·이용도 어려워,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전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의 추억을 포기하지 않고는 다른 서비스로 옮길 수 없다.

이에 따라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확대·강화한 2016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정보주체에게 열람 요구권(제15조 제1항)과 사본 요구권(제15조 제3항) 이외에 정보 이동권(제20조)을 별도로 인

정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 2016). 열람 요구권과 사본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한 권리로써 정정 요구권, 삭제 요구권, 정지 요구권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GDPR Recital (63)).<sup>3)</sup> 때문에 사본 요구권에서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전자적 형식(a commonly used electronic form)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되나(GDPR 제15조제3항), 정보 이동권의 경우에는 정보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으로 제공해야 한다(GDPR 제20조제1항). 이에 더하여, 정보 이동권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가 지정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GDPR 제20조제2항).

## 2. 정보 이동권의 입법 정책적 목표

유럽연합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작업반(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WP29)<sup>4)</sup>은 정보 이동권 도입의 필요성 또는 효과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WP29, 2017).

첫째,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서 도입된 정보 접근권(사본 요구권)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선택한 형식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만, 정보 이동권 하에서는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IT 환경에서 다른 IT 환경으로 쉽게 이동, 복제, 전송이 가능하여 정보주체의 역량(권한)이

2) FIPP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창범(2017), 미국의 여행 관광 정보 추계를 위한 민간데이터 활용 법제, 8-9쪽,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3) “사본 요구권”은 원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사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개인정보 처리를 견제할 목적을 설계된 것으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4) “WP29”는 1995년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제29조에 의하여 EU 가맹국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유럽연합에서 통일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opinion), 권고(recommendation), 지침(guideline)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현행 GDPR 아래에서는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크게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이는 양면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sup>5)</sup>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인접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벗어나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한다.

둘째, 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관계를 균형적인 관계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지금까지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었으나, 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게 한다(Cho, S. et al., 2019).

셋째, 정보 이동권은 서비스의 이전·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전 또는 전환에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개인정보로 한정하지 않는다.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 소장(所藏) 가치 및 재이용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내 최고 개인정보보호기구라 할 수 있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도 정보 이동권 도입시 기대되는 이익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정보 이동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EDPS, 2015).

첫째, 정보 이동권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빅 데이터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처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정보 이동권을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보다 균형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빅 데이터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정보주체는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또는 추가 서비스를 얻는 대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창출된 가치로부터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목적으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에도 유용하다. 특히 정보주체가 서비스 제공자를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여섯째,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신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고 덜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편, 개정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mendment) Act 2020: S-PDPA)<sup>6)</sup>은 정보 이동권의 도입 목적이 정보주체의 자율성 및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개선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정보 이용에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제26F조). 그러나 유럽연합 WP29가 지적한 바와 같이 EDPS가 제시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효과는 정보 이동권의 부수적인 효과이지 그것이 유일한 목적 또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

5)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1), Online platforms: Economic and societal effects 참조.

6) 2020년 11월 개정. 개정법 중 정보 이동권 관련 규정(26F~26G)은 하위법령(규정)의 미제정으로 2021년 7월 현재 미시행.

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많은 문헌들이 정보 이동권의 도입 필요성 또는 목적을 주로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두고 있으나,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라는 정보 이동권의 본래 목적을 오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정보 이동권은 빅브라더 등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WP29, 2017).

### 3. 정보 이동권의 도입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DPR에서 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보주체는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한 자신의 동영상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내려받고 싶을 때가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 이동권은 모든 정보주체들에게 허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이동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찬성: Cho, Y. & Choi, J., 2020, 반대: Kim, S. & Lee, Y., 2019).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었고(2021. 2. 4. 시행), 2020년 10월 20일에는 민원업무법 일부 개정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 이동권이 도입되었으며(2021. 10. 21. 시행), 2021년 6월 8일에는 전자정부법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이 도입되었다(2021. 12. 9. 시행).

그러나 이들 개별법에 도입된 정보 이동권은 특정 산업 및 특정 정보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한적으로만 행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 이동권을 신설한다는 것은 정보 이동권을 모든 정보주체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별법에 의하여 도입된 정보 이동권이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보다

는 개인정보 유통 및 활용, 행정 간소화, 페이퍼리스(Paperless)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에 의해 도입된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보다는 개인정보의 활용 및 유통 촉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개별법의 제정과 해석에 있어서 입법 및 해석의 기준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 이동권이 신설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이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법의 제정을 막을 수 있고 개별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제5조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제8조의2).

## III. 정보 이동권 관련 법적 이슈

### 1. 정보 이동권의 2가지 유형

정보 이동권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르다. 정보 이동권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 GDPR 제20조는 정보 이동권을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제3자에게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은 개인정보 사본 요구권과 자신

에 관한 개인정보 이전 요구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의 전송 요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개인정보 “이전 요구권”이라 하고 후자를 “전송 지시권”이라 한다.

### 1) 정보주체로의 “이전 요구권”

이전 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주체는 이전 요구권을 행사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디바이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해 둘 수 있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제공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는 것도 이전 요구권에 해당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나 시스템뿐 아니라 제3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클라우드 등)에 저장·관리하는 것도 이전 요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전 요구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접근권(Right to access)을 보완한다. 이전 요구권의 한 가지 특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정보를 “구조화되고(Structured),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사본 요구권을 보충·보완한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곡(Tracks)의 재생 목록 또는 청취한 곡의 내역을 검색하여 특정 곡을 몇 번이나 청취했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어떤 음악을 구매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보주체는 웹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연락처 목록을 검색하여 청첩장 발송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포인트 적립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WP29, 2016).

유럽연합 GDPR은 사본 요구권(제15조 제3항)과 함께 이전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20조), 미국 CCPA는 사본 요구권과 이전 요구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1798.110). 한편, 싱가포르 S-PDPA는 개인정보 사본 요구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요구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21조). 사본 요구권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이전 요구권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제한되고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2) 제3자로의 “전송 지시권”

전송 지시권은 정보주체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로 직접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GDPR 제20조 제2항). 전송 지시권의 행사 방법에는 여러 모델이 있다. 정보주체가 정보 이동자에게 직접 정보이동을 지시·요구할 수 있는 방식(push 모델), 정보 수령자를 통해서 이동을 요구하는 방식(pull 모델), 제3자(신탁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중개 방식) 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의 직접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포맷을 개발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를 위해 기술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유럽연합 GDPR의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도적으로 전송의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은 노력으로도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의 형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cital 68).

반면, 미국 CCPA는 정보 이동권(§1798.100.)을 규정하면서도 정보주체 자신에 대한 이전 요구권만 규정하고 제3자로의 전송 지시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CCPA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주와 항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1798.100(a)).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 후 해당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798.100(c)). 요구받은 개인정보는 문서로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우편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에는 휴대 가능해야 하고 소비자가 방해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읽기 쉬운 형식이어야 한다(§1798.100(d)).

반면, 싱가포르 S-PDPA는 미국 CCPA와 달리 정보주체 자신으로의 이전 요구권은 규정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의 전송 지시권만 규정하고 있다(제26H조).

## 2. 정보 이동자의 범위·자격 제한

### 1) “이전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이동자

“이전 요구권”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 이동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오너십(Ownership)을 중시하거나 중소기업자의 부담, 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려고 할 것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전 요구권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요구권의 신설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사본을 요구하면 이

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본 요구권에 따라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손으로 작성한 수기 정보도 사본 요구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이전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한정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관·이전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고(Structured),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될 뿐이다.

이처럼 이전 요구권은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르지만,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정도이거나 사본 제공 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개인정보의 처리 능력 등)를 고려하여 이전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GDPR과 CCPA도 이전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CCPA는 연간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5만 명 이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 자체가 면제된다.

### 2) “전송 지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이동자

“전송 지시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GDPR과 CCPA는, 이전 요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송 지시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GDPR, CCPA, S-PDPA는 모두 공공기관을 정보 이동권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전송 지시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어렵게 모은 개인정보가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전되어 시장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송 지시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 이동자)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자 등을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불편·불이익보다 중소기업자의 고객 이탈,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 약화에 따른 이용자의 소비자후생 저하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주체는 전송 지시권의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이나 사본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전 요구권을 행사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도 있으며, 이전받거나 내려받기한 개인정보를 제3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정보 수령자의 범위·자격 제한

전송 지시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 수령자)의 자격이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을 인증·허가·지정 등을 받은 사업자나 공공기관 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제안된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DMA)은 개인정보의 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이전받은 개인정보(데이터)의 결합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a)). 또한, 싱가포르 S-PDPA는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정보 이동자가 정보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제26H조 제6항). 또한, 유럽연합 GDPR과 마찬가지로 정보 수령자를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싱가포르와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이동권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제26조, 제26F조 제1항).

정보 수령자의 범위나 자격을 제한하는 대신에 전송 의무를 지고 있는 정보 이동자에게 정보 수령자의 보안 능력이나 준법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에게 정보 수령자의 자격이나 능력까지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정보 이동자에게 개인정보 이동 의무 이외에 자신의 책임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 또는 점검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보 수령자의 자격을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단지 중소기업자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 인증·허가·지정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준법정신이 낮다거나 보안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자야말로 개인정보가 더 절실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GDPR과 유럽연합 WP29도 정보 이동권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이나 범위에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보 이동 의무자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개인정보를 이전받게 될 자의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검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4. 정보 이동자 및 정보 수령자의 책임 범위

##### 1) 정보 이동자의 책임 범위

정보 이동성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정보 수령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한 정보 이동자는 정보주체 본인 또는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정보 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보 이동자는 정보주체를 대신해서 정보 수령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고,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정보 수령자를 선택한 것은 정보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수령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정보 이동자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경우와 달리 제공의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수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법 제18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령자의 정보보호능력을 점검 확인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보 이동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정보주체를 대신해서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 이동을 요구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유형이 실제로 정보주체가 이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는 정보 이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미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정보 이동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 이동자는 사전에 이전할 개인정보의 품질(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등)을 확보해야 할 별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물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항상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보 이동권 행사에 따른 개인정보 이동이라고 해서 그 이상 추가적인 품질 보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밖에 정보 이동자는 정보주체의 정보 이동권 행사에 대비해서 개인정보의 파기를 미루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도 없다.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등에 정보주체의 정보 이동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정보 이동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GDPR과 달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 수탁 계약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제26조 제1항). 그러나 수탁자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이 준용되고(제26조 제7항),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므로(제30조 제1항 제5호)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GDPR과 유사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PDPA 제65조(위원회의 규정 제정권)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기술적 및 절차적 조치, 정보 이동권 신청 모델,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단(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Regulation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Wilson Ang, Stella Cramer, Jessica Paulin & Jeremy Lua, 2020). 특히 S-PDPA 제26H조 제6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상(class)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특정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 정보 수령자의 의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정보 수령자는 새로운 개인정보의 처리가 과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웹메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신에 관한 이메일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여 이전받은 이메일을 다른 기록보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메일을 이전받은 정보 수령자(기록보관 플랫폼)는 정보주체의 이메일 상대방들의 연락처 내역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보 수령자는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새로운 처리 목적(보관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WP29, 2016).

싱가포르 S-PDPA는 이를 해석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명확히 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개인 또는 가사 목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이거나 정보주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 제3자의 동의없이 정보 수령자에게 이전이 가능하고, 정보 수령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전받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1조 제2, 3항).

이 경우 정보 이동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 수령자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비밀보호 또는 정보공개 제한과 관련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밖에 정보 이동자에게 적용되는 직업상의 행동규약(any rule of professional conduct)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제261조 제4항).

또한, 정보 이동권은 정보 수령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주체의 이동권 행사로 당연히 정보 수령자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 수령자는 정보주체의 이동권 행사에 따라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무조건 다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정보 수령자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만 선별적으로 이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전받을 개인정보의 범위, 목적,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 체결한 이전계약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정보 수령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수령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정보주체와 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 수령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과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5. 거래 종료 또는 회원 탈퇴 후 이동권 행사

열람 요구권과 사본 요구권은 거래 종료 후나 회원 탈퇴 후에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보 이동권도 권리 행사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 이동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서 유럽연합 GDPR과 미국 CCPA는 어떤 제

한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싱가포르 S-PDPA는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때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지속적인 관계(Ongoing Relationship)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H조 제3항). 이 경우 “지속적인 관계”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활동 또는 상업적·비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와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의미한다(제26F조 제1항). 따라서 거래 종료 또는 회원 탈퇴 후라면 원칙적으로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적어도 광고성 정보의 송수신 등과 같은 어떤 관계의 지속이 있어야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 S-PDPA는 전송 지시권만 규정하고 있고 이전 요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전송 지시권을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6. 정보주체의 다른 권리의 관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다른 권리의 침해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이동 후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이동자는 정보주체의 정보 이동권 행사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 이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별도 요구 없이 자신의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보관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단축해서도 안 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이동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이동한 후에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정보 이동권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이동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는 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이전을 받게 될 개인정보만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수기로 작성된 정보나 PDF로 작성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요구권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동권 행사를 이유로 기존에 정보주체에게 부여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IV. 이동권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

GDPR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통제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이용권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이어야 하고, 둘째,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이어야 하며, 셋째, 자동화 수단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이어야 한다(제20조).

### 1.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만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정보 또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아니다. GDPR에서는 특정 정보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WP29, 2016).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이 해당 가명정보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이 투입된 가명정보를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상 정보주체 이외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나

치게 제한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이메일, 전화, 문자전송, VoIP 등은 가입자인 정보주체의 계정 기록에 착신 및 발신과 관련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 기록에는 여러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만 해당 기록들은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임과 동시에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정보 이동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록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기록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정보 수령자는 제3자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 기록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WP29, 2016). GDPR 제20조 제4항은 정보 이동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

GDPR에서 정보주체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자신이 처리에 동의한 개인정보와 자신이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처리한 개인정보에 한정된다. 동의 또는 계약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인 한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정보이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생성한 개인정보(메타정보, 구매이력, 행태정보 등)이건 모두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점에서 개인이 구입한 책 제목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듣는 노래는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기초하여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 이동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럽연 WP29(2016)도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면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로 보아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온라인 서식을 통해 제출한 이름, 나이, 주소 등과 같은 계정 정보는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

가 정보주체의 활동을 관찰해서(Observe) 수집한 정보도 정보주체가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유럽연합 WP29는 정보 이동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R 제20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에 의한 “제공”의 의미에는 스마트 미터기 등 IoT 기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원시 데이터(Raw Data), 활동 로그(Logs), 웹사이트 이용 이력, 검색 활동 등과 같이 이용자의 활동을 관찰하여 수집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개인의 트래픽 데이터, 위치정보 등도 마찬가지이며, 웨어러블 기기가 추적하는 심장 박동과 같은 원시 데이터도 같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그 정보의 출처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정보(정보주체의 주소, 이름, 나이 등)와 2) 서비스 또는 디바이스를 이용하다가 정보주체가 남기거나 정보주체의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구매이력, 행태정보, 메타정보 등)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이므로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용자 프로필 등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원시정보를 분석하여 새로 생성된 정보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동권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GDPR에서는 1)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의 무준수를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 2)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한 개인정보, 3)개인정보처리자나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처리한 개인정보, 4)공무수행 또는 공적권한 행사를 위해 처리한 개인정보는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20조제1항).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령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는 이동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B2B)에서 처리되는 직업상의 연락처 정보도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WP29, 2016).

직원의 개인정보가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고용계약(사용자와의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작용하지 아니한 상태의 계약)에 기초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만 이동권의 대상이 된다. 유럽연합 WP29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동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사업무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추구를 근거로 하거나 고용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수집한 것도 많다. 따라서 급여 서비스(Pay Service), 보상 서비스(Compensation Service), 내부 채용(Internal Recruitment) 등과 같은 기록은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상황에서 정보 이동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case by case로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WP29, 2016).

미국 CCPA는 GDPR과 달리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및 계약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1798.100 (a), (d)), 싱가포르 S-PDPA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또는 생성한” 개인정보로써 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제26F조 제1, 2항).

### 3.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유럽연합 GDPR에서 정보 이동권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종이 파일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의 전송은 기술적으로 전송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전 의무가 발생한다. GDPR 제20조 제2항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상호 호환적인 포맷을 개발·이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더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처리 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GDPR Recital 68).

미국 CCPA는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 중인 개인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동 가능하고 (Portable) 이용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98.100.(d)). 즉,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정을 통해서 전달하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해야 한다(§1798.130.(a)(5)).

싱가포르 S-PDPA는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써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 및 정보주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고, 동시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H조 제3항, 제26F조 제2항).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논리적인 필요는 없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요구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별도 동의 이상의 정보주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GDPR과 CCPA도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정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정주의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되거나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되거나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제24조의2 제3항).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요구되거나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5. 다른 사람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

### 1) 추론 또는 파생 정보

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론 정보(Inferred Data)와 파생 정보(Derived Data)는 정보주체가 제공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노력과 기술을 투입해서 새로 생성 또

는 생산한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기술과 노력을 투입해서 새로 생성·생산한 추론 정보와 파생 정보는 제공 정보 또는 수집 정보로 볼 수 없다. 추론 정보 또는 파생 정보에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도 포함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WP29는 가명정보도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기술과 노력을 투입해 새로 만들어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정보 이동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의 건강관리(혈액검사 결과 또는 CT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단서 등), 위험관리(신용평점 부여 등), 금융규제(돈세탁 방지법준수 등) 등의 맥락에서 생산된 프로파일은 그 자체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정보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추론하거나 도출한 것일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프로파일의 일부일 수도 있다. 또한,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프로파일링을 통해 분석·생성한 정보도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로부터 추론한 정보이므로 역시 이동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기술적 수단(단말기, 앱 등)을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것이므로 새로 생산·생성된 정보는 아니므로 모두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수학적으로 사칙연산을 통해서 얻은 평균값, 합계 등은 추론정보나 파생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CCPA는 추론정보나 파생정보가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관리되

고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본 요구 또는 이전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위해 재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므로(§1798.100.(e), §1798.110.(d)), 원칙적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이동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이동권을 이유로 1회성 거래를 위해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1798.100(e), §1798.110(d)).

싱가포르 S-PDPA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거나 생성한” 개인정보가 이동권의 대상이므로 규정상으로는 가명정보, 추론정보, 파생정보도 이동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혁신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생 정보는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그밖에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유형(Type)을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Regulations)할 예정이다(Charmian Aw & Carolyn Chia, 2020).

## 2) 제3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동권의 행사가 다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정보주체(제3자)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이용하던 원래의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또는 가사 목적의 서비스(이메일, 전화, 이체 등)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정보 이동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셋을 정보 수령자에게 전송해 주어야 정보 수령자가 계속해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개인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메일, 전화, 이체 등의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자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웹메일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는 웹메일을 통해 친구, 친척, 가족, 그 밖의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사적 활동과 관련해서 생성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신 및 발신 전자메일의 전체 디렉토리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전송해야 한다. 은행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주체의 은행계좌에는 계좌 소유자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계좌 소유자에게 송금을 한 다른 개인의 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정보 이동권 행사로 제3자의 개인정보가 계좌 소유자 또는 정보 수령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정보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수령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보 수령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 관한 프로파일 작성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다. 제3자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정보주체에게 개인 또는 가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WP29, 2016). 따라서 정보주체가 전송 지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 이동 계약서 또는 이전 동의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 이전할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주체 또는 정보 수령자가 이전받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정보 이동자가 그와 같은 처리에 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보 이동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싱가포르 S-PDPA는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제261조

제4항). 정보 이동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 수령자에게 이전했다는 이유로 비밀보호 또는 정보공개 제한과 관련된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밖에 이전한 정보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직업상의 행동규약(any rule of professional conduct)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제261조 제4항).

정보주체는 처리정지 또는 삭제 요구권이 있으므로 정보 이동자이든 정보 수령자이든 제3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의 개인정보를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삭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이동권 행사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제3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 수령자에게 이전하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정보 이동자는 제3자를 위한 동의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WP29, 2016). 그와 같은 상황은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필요할 수 있다.

### 3)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

정보 이동권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 또는 영업비밀 특히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저작권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의 권리를 검토·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토 결과가 타인의 지식재산,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의 이동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채무불이행, 거래상 분쟁 등과 같은 다른 계약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 이동권의 요구를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WP29, 2016).

정보 이동권이 지식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이나 부당한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이동을 거부할 수 있다면 정보 이동권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비즈니스 리스크 자체가 정보 이동권 요구를 거

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비밀 또는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에서 개인정보를 이동해 주어야 한다(WP29, 2016).

## V. 정보 이동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 1. 정보 이동권 행사 방법 등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이동권의 행사 방법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제30조제1항). 따라서 정보 이동권에 대해서도 그 행사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할 때는 물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하고, 특히 정보 이동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권리에 관한 정보와 구분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이에 더하여, WP29는 “정보 접근권(열람 요구권 및 사본 요구권)”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 이동권”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계정을 해지 또는 탈퇴하기 전에 미리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WP29, 2016). 이를 통해 정보주체는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자신의 기기로 또는 다른 서비스제공자에게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전할 수 있다.

### 2. 정보 이동에 대한 동의 또는 계약의 체결

GDPR에는 정보 이동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 이동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유럽연합 WP29는 정보주체가 정보 이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정보 수령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주거나 개인정보 이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WP29, 2016). 정보주체가 정보 수령자와 사전 합의나 협의 없이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이동권의 행사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공은 아니므로 제15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동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이동 목적, 이동 범위(개인정보 항목), 이용·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해서 동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정보주체에 관한 인증절차 등의 마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정보 이동권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편리하고 쉽게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제4항). 이와 같은 방법 및 절차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절차도 포함된다.

이용자를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만으로 식별하거나 정보가 가명(Pseudonyms) 또는 고유 식별자(Unique Identifiers)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가 정보주체의 실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정

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정보 이동권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인증을 이유로 실명확인(본인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과 정보주체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등의 단계에서 이미 사용자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로부터 사용자 확인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계약 체결 또는 동의시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사용자 확인 또는 본인확인 정보를 정보 이동권 행사시 정보주체 인증의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용자 확인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선택한 아이디(Username)와 비밀번호>Password)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이 있다.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 소셜 네트워킹 계정, 그 밖의 다양한 서비스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GDPR은 정보 이동권 행사시 이동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를 인증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GDPR 제12조 제6항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정보주체의 신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Ⅵ. 정보 이동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6일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정보 이동권 관련 조항(제35조의2)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재고해야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전송 지시권”의 도입 필요성

개정안은 이전 요구권과 전송 요구권을 둘 다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송 지시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 집중,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이 크므로 “이전 요구권”만 규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제공동의, 가명처리, 추가처리 등의 제도만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이전 요구권과 함께 전송 지시권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sup>7)</sup>

## 2. 정보 이동자의 범위·대상 제한

개정안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추후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 등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35조의2 제1항).<sup>8)</sup>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정보 이동권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본 요구권과 비교해서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를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거대 플랫폼이나 대기업,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가 거대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대기업 등으로 유출되어 거대 플랫폼 등으로의 개인정보 집중과 독점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이전 요구권”과 달리 “전송 지시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등을 정보 이동자

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전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개인정보 집중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도 크지 않다. 예컨대, 영국의 기업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은 정보 전송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① 가스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 ② 모바일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④ 규칙(regulations)으로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 또는 제공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제89조 제2항).

## 3. 정보 수령자의 자격·범위 제한

개정안 제35조의2 제1항은 정보 수령자의 대상을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수령자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보안능력, 준법역량 등이 부족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반면 대기업에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 집중과 독점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 수령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여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의 일방적인 집중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등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유럽연합 DMA는 게이트키퍼(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7) 개정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각주 7) 참조.

것이 금지된다(제5조(a)). 이에 따라 게이트키퍼는 이전받은 개인정보를 주요 서비스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빅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이동자가 정보 이동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 수령자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 4. 이동 대상 정보의 유형·범위 제한

개정안은 이동 대상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 체결 및 이행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다.<sup>9)</sup> 이에 따르면 민감정보(제23조)와 고유식별정보(제24조)는 이동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이동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공공정보도 이동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공정보는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너무 크고 전자정부법 및 민원업무법만으로도 지나쳐서 공공정보를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시킬 실익은 없어 보인다.

#### 5. 정보 이동자 및 정보 수령자의 책임

개정안은 ‘전송 요구와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정보 이동자와 정보 수령자에게 특별한 의무

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안 제35조의2 제4항).<sup>10)</sup> 이에 대해서는 정보 이동자에게 정보 수령자의 선임·감독에 유사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송 지시권의 행사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의 위험은 정보주체 본인과 정보 수령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보 이동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 S-PDPA는 정보 이동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수령자에게 이전한 경우 비밀누설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 이동자의 면책을 명시하고 있다(제261조 제4항).

#### 6. 이동권에 기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국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정보 수령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 제28조의8에 따르면 1)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의 경우, 3) 국외이전을 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인증을 받은 경우,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이에 따르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인증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무제한으로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또는 지시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국외이전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된다. 국내에서는 공공정보도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바 공공정보까지 국외이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9) 개정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2.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10) 개정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와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시 공공정보의 국외유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싱가포르 S-PDPA는 상업적 정보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이전이 국익(National Interest)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제26H조 제(6)(a)).

## 7. 개인정보 이전 또는 전송 비용 부담

개정안은 정보 이동 비용 부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동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정보 이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경우 이동권 행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을 받고자 하는 정보 수령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궁극적으로 그 비용이 중소기업에 전가되어 정보 이동권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동 의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비용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유럽연합 GDPR과 싱가포르 S-PDPA는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미국 CCPA는 무료 제공 또는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798.100.(d)).

## VI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율성과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영국,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있다. 정보 이동권이 보편적인 개인정보권의 하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 민원업무법, 전자정부법 등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 이동권을 포함하고 있어 머지않아 정보 이동권이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보 이동권에 관한 여러 입법론에서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보 이동권이 정보주체의 자율성과 자기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설계되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공공정보를 정보 이동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 등은 그것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등에 미칠 영향을 전혀 분석·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전문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집적과 결합, 전문가관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포괄 위탁하는 방식의 정보 이동권의 행사 방법 등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국내에서는 정보 이동권이 고객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보다는 이미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을 제외하려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정

11)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이하 "국외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국외이전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인증을 받은 경우
5.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 이전하는 경우

보 이동권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이익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제도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 등을 배제·소외시키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정보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특히 대기업, 게이트키퍼 등)으로 집중되도록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밖에 본고는 그동안 정보 이동권 논의에서 소홀이 다루어진 정보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범위, 이전 또는 전송이 제한·금지되는 추론·파생 정보 등의 사례,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동 및 이용 제한, 정보 이동에 따른 정보 이동자의 책임 또는 면책 범위, 정보 이동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정보 이동권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책임 영역 밖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균형잡힌 입법이 필요하다.

## ■ References

- Article 29 Working Party (2016),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Revised and adopted on 5 April 2017).
- Cho, S., Chung, W., Lee, S., Yi, C. & Park, G. (2019). *A Study on the System to Promote Individual-led Data Transaction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조성은·정원준·이시직·이창범·박규상 (2019).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Cho, Y. & Choi, J. (2020). "Data Portability, MyData issues and future tasks." *issues and issues 1767*, National Assembly.
- {조영은·최정민 (202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767호, 국회입법조사처.}
- Chung, W. (2020). "Benefits of introducing Data Portability and legislative measures." *Sungkyunkwan Law Journal 32(2)*, 69-112 .
- {정원준 (2020).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32권 2호, 69-112.}
- Aw, C. & Chia, C. (2020). *Singapore's Amended Data Protection Law To Take Effect Imminently*, 8 October, Reed Smith (<https://www.reedsmith.com>)
- Kim, S. & Lee, Y. (2019). "Discussions on Data Portability in EU and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ung-Ang law Journal 21(4)*.
- {김서안·이인호 (2019).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21권 4호.}
-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2015).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A call for transparency, user control,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accountability*, P. 12-13.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21). *Online platforms: Economic and societal effects*.
-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5).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6).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20).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 Lee, C. (2019). "Laws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Data for the Estimation of Travel and Tourism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Latest*

- foreign legislation information*, 5, 8-9.
- {이창범 (2019). 미국의 여행·관광 정보 추계를 위한 민간데이터 활용 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5권, 8-9.}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2021). Notice on the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anuary 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월 6일}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1973). *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 Report of the Security's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ed Personal Data Systems*.
- Wilson Ang, Stella Cramer, Jessica Paulin & Jeremy Lua (2020). *Singapore's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changes to the Singapor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May 21.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alifornia Civil Code, DIVISION 3. OBLIGATIONS, PART 4. OBLIGATIONS ARISING FROM PARTICULAR TRANSACTIONS, TITLE 1.81.5.)
- Singapore Personal Data Protection (Amendment) Act 2020, PART VI B DATA PORTABILITY. 26F~26J.